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06
----------	-------

발의연월일 : 2025. 7. 21.

발 의 자 : 윤준병 · 최혁진 · 문대립
박용갑 · 이병진 · 유동수
김교홍 · 전용기 · 김기표
임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공공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나, 이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와 달라 새 정부 출범 시마다 기관장의 잔여임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직전에 다음 새 정부의 정책 집행을 간접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켜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현실과 법 규정 간의 괴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 등의 연임을 1년을 단위로 두 차

례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재직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도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공기관이 정부와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는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년을 단위로”를 “1년을 단위로 두 차례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임기 등의 제한) 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 본문 및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을 임기 종료일로 본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임면권 또는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시
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기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관장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임기) ① (생 략) ②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임원은 <u>1년을 단위로</u>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1. ~ 3. (생 략) ③ · ④ (생 략)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u><신 설></u>	제28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u>1년을 단위로 두 차례에 한하여</u>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28조의2(임기 등의 제한) 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 본문 및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

을 임기 종료일로 본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기관장
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대
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임면권 또는 임명제청권을 행
사할 수 없다.